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19. 10. 23.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년 10월 11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10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19. 10. 2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장중연)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여 행정기구와 분담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민의 삶에 직결된 사업부서 중심으로 국 편제(안 제3조)
- 구정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안 제5조, 안 제6조)
- 구 정책사업의 메시지 부여를 위한 명칭변경(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11조)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 편제 변경·업무이관(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래의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성과를 최대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국 편제를 변경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미래비전추진단에 비전협력과를 신설하여 대외교류, 국제금융지구 활성화, 의료특구업무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토록 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홍보전산과를 홍보미디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체육과와 민원여권과의 부서 편제를 변경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규정목표의 효율적 추진과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행정수요의 질적·양적변화가 매우 급격하고도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관리의 탄력적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한 바 조직관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고, 문제점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는 상시화된 노력이 요청되는 바임.

### 4.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현 “보육지원과”의 주된 업무가 보육이므로 현행 명칭이 개정안의 “여성가족과”보다 적합하다고 여겨지므로 명칭 변경의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나. 수정내용

- 안 제7조제1항 중 “여성가족과”를 “보육지원과”로 하고, 안 부칙 중 “보육지원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는 현행대로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 5.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159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2019. 10. 21.

제안자: 허홍석 의원 외 1명

## 1. 수정이유

- 현 “보육지원과”의 주된 업무가 보육이므로 현행 명칭이 개정안의 “여성가족과”보다 적합하다고 여겨지므로 명칭 변경의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2. 수정내용

- 안 제7조제1항 중 “여성가족과”를 “보육지원과”로 하고, 안 부칙 중 “보육지원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는 현행대로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여성가족과”를 “보육지원과”로 하고, 안 부칙 중 “보육지원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는 현행대로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재정국) ① 재정국에 재정관리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부과과를 둔다.</p> <p>② (생략) 부칙 (생략)</p>	<p>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를 둔다.</p> <p>② (생략) 부칙</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p> <p>⑲ (...) 제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과 “보육지원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과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p> <p>⑳ (...) 제23조제2항 중 “보육지원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p> <p>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지원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p> <p>제35조제2항 중 “보육지원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p> <p>㉑ ~ ㉓ (생략)</p>	<p>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를 둔다.</p> <p>② (개정안과 같음) 부칙</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개정안과 같음)</p> <p>⑲ (...) 제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p> <p>⑳ (...) 제30조제3항제2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p> <p>㉑ ~ ㉓ (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미래비전추진단, 행정국, 재정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교통국”을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행정지원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 구정비전개발, 주민소통, 예산, 대내외 평가, 통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창출·지원, 지역경제진흥, 유통,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계약, 물품관리, 지출에 관한 사항
4. 구세입 총괄 및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미래비전추진단) ① 미래비전추진단에 비전협력과, 미래교육과, 사회적경제과를 둔다.

② 미래비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교류, 국제금융지구 활성화, 의료특구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도서관운영, 학교지원, 과학육성 및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지원,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서비스 자원개발·연계·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 자활사업, 장애인복지,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3. 보육, 여성정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등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및 드림스타트, 외국인 및 다문화업무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복지시설,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점상·가로정비 및 전문건설업 관리,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 환경미화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수질·토양오염 관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소음·진동대책,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개발 및 관리 녹지보전,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복원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에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재난 복구대책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도로계획 수립·조정,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사업, 하천·유수지, 수방대책,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설비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자동차와 건설기계등록, 교통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주·정차지도 단속, 교통시설 설치, 주차장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관리, 인사, 직원능력개발 및 후생복지, 의회협력,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
2. 구정홍보, 구정의 정보화, 전산운영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3. 동 행정 지원, 자원봉사,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회단체 지원 총괄, 지역협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 체육시설,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5. 문서관리,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통합 인허가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2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2호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소통기획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국장”을 각각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재정국장”을 각각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의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나목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⑪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

다.

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3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단의 설치) 구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미래비전추진단, 행정국, 재정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교통국</u> 을 둔다.	제3조(국·단의 설치)----- ----- <u>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행정지원국</u> -----.
제5조(미래비전추진단) ① 미래비전추진단에 <u>소통기획과, 사회적경제과, 미래교육과</u> 를 둔다. ② 미래비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구정의 기획·조정, 구정비전 개발, 주민소통, 국제금융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u> 2. <u>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협치,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u> 3. <u>교육정책, 도서관운영, 학교지원, 과학육성 및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운영에 관한 사항</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제5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u>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u> 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구정의 기획·조정, 구정비전 개발, 주민소통, 예산, 대내외 평가, 통계에 관한 사항</u> 2. <u>일자리창출·지원, 지역경제 진흥, 유통,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u> 3. <u>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계약, 물품관리, 지출에 관한 사항</u> 4. <u>구세입 총괄 및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u> 5. <u>지방세 부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u>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u>총무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u> 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미래비전추진단) ① 미래비전추진단에 <u>비전협력과, 미래교육과, 사회적경제과</u> 를 둔다. ② 미래비전추진단장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관리, 인사, 직원능력개발 및 후생복지, 대외교류에 관한 사항

2. 구정홍보, 구정의 정보화, 전산운영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3. 동 행정 지원, 자원봉사,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회단체 지원 총괄,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

4. 문서관리,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통합 인허가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 체육시설,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재정국) ① 재정국에 재정관리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부과과를 둔다.

② 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대내외 평가, 통계, 의회협력,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계약, 물품관리, 지출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지원, 지역경제진흥, 유통,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1. 대외교류, 국제금융지구 활성화, 의료특구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도서관운영, 학교지원, 과학육성 및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지원,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서비스 자원개발·연계·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 자활사업, 장애인복지,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3. 보육, 여성정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4. 구세입 총괄 및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 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 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서비스 자원개발·연계·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 자활사업, 장애인 복지,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3. 보육, 여성정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등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및 드림스타트, 외국인 및 다문화업무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복지시설,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제9조(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4. 아동친화도시 등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및 드림스타트, 외국인 및 다문화업무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복지시설,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제8조(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점상·가로정비 및 전문건설업 관리,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 환경미화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수질·토양오염 관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소음·진동대책,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개발 및 관리 녹지보전,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복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제9조(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에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점상·가로정비 및 전문건설업 관리,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 환경미화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수질·토양오염 관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소음·진동대책,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개발 및 관리 녹지보전,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복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1조(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에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재난 복구대책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도로계획 수립·조정,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도로와 도로시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재난 복구대책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도로계획 수립·조정,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사업, 하천·유수지, 수방대책,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설비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자동차와 건설기계등록, 교통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주·정차지도 단속, 교통시설 설치, 주차장에 관한 사항

제11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관리, 인사, 직원능력개발 및 후생복지, 의회협력,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
2. 구정홍보, 구정의 정보화, 전산운영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



설물 유지·관리

3. 하수사업, 하천·유수지, 수방 대책,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 설비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자동차와 건설기계등록, 교통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주·정차지도 단속, 교통시설 설치, 주차장에 관한 사항

항

3. 동 행정 지원, 자원봉사,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회단체 지원 총괄, 지역협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 체육시설,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5. 문서관리,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통합 인허가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59 호
----------	---------

제출연월일: 2019. 10.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여 행정기구와 분담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국민의 삶에 직결된 사업부서 중심으로 국 편제(안 제3조)

-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행정지원국

나. 구정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안 제5조, 안 제6조)

- 소통기획과와 재정관리과를 통합하여 '기획예산과'로 신설
- 미래비전추진단의 비전협력과(대외협력, 국제금융특구, 의료특구) 신설

다. 구 정책사업의 메시지 부여를 위한 명칭변경(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11조)

- 재정국 → 기획재정국
- 행정국 → 행정지원국
- 보육지원과 → 여성가족과
- 홍보전산과 → 홍보미디어과

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 편제 변경·업무이관(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1조)

- 부서편제 변경
  - 일자리경제과↔재무과
  - 미래교육과↔사회적경제과
  - 문화체육과↔민원여권과

○ 업무이관

- 의회법무: 재정관리과 → 총무과
- 지역협치: 사회적경제과 → 자치행정과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9. 10. 2. ~ 10. 7. / 5일간)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미래비전추진단, 행정국, 재정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교통국”을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행정지원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 구정비전개발, 주민소통, 예산, 대내외 평가, 통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창출·지원, 지역경제진흥, 유통,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계약, 물품관리, 지출에 관한 사항
4. 구세입 총괄 및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미래비전추진단) ① 미래비전추진단에 비전협력과, 미래교육과, 사회적경제과를 둔다.

② 미래비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교류, 국제금융지구 활성화, 의료특구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도서관운영, 학교지원, 과학육성 및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지원,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서비스 자원개발·연계·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 자활사업, 장애인복지,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3. 보육, 여성정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등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및 드림스타트, 외국인 및 다문화업무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복지시설,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점상·가로정비 및 전문건설업 관리,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 환경미화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수질·토양오염 관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소음·진동대책, 에너지관리  
리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개발 및 관리 녹지보전,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복원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에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  
차문화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재난 복구대책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도로계획 수립·조정,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사업, 하천·유수지, 수방대책,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설비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자동차와 건설기계등록, 교통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주·정차지도 단속, 교통시설 설치, 주차장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  
육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관리, 인사, 직원능력개발 및 후생복지, 의회협력,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

2. 구정홍보, 구정의 정보화, 전산운영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3. 동 행정 지원, 자원봉사,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회단체 지원 총괄, 지역협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 4. 문화재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 체육시설,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 5. 문서관리,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통합 인허가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2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2호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소통기획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국장”을 각각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재정국장”을 각각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과 “보육지원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과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육지원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지원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보육지원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의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나목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㉚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㉛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3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단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미래비전추진단, 행정국, 재정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교통국</u>을 둔다.</p> <p>제5조(미래비전추진단) ① <u>미래비전추진단에 소통기획과, 사회적경제과, 미래교육과</u>를 둔다.</p> <p>② <u>미래비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구정의 기획·조정, 구정비전개발, 주민소통, 국제금융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u></li> <li>2. <u>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협치,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u></li> <li>3. <u>교육정책, 도서관운영, 학교지원, 과학육성 및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운영에 관한 사항</u></li> </ol>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6조(행정국) ① <u>행정국에 총무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u>를 둔다.</p>	<p>제3조(국·단의 설치) ----- -----<u>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행정지원국</u>-----.</p> <p>제5조(기획재정국) ① <u>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u>를 둔다</p> <p>② <u>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구정의 기획·조정, 구정비전개발, 주민소통, 예산, 대내외 평가, 통계에 관한 사항</u></li> <li>2. <u>일자리창출·지원, 지역경제진흥, 유통,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u></li> <li>3. <u>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용지의 용허가와 점용료, 계약, 물품관리, 지출에 관한 사항</u></li> <li>4. <u>구세입 총괄 및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u></li> <li>5. <u>지방세 부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u></li> </ol> <p>제6조(미래비전추진단) ① <u>미래비전추진단에 비전협력과, 미래교육과, 사회적경제과</u>를 둔다.</p>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관리, 인사, 직원능력개발 및 후생복지, 대외교류에 관한 사항

2. 구정홍보, 구정의 정보화, 전산운영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3. 동 행정 지원, 자원봉사,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회단체 지원 총괄,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

4. 문서관리,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통합 인허가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 체육시설,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재정국) ① 재정국에 재정관리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부과과를 둔다.

② 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대내외 평가, 통계, 의회협력,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계약, 물품관리,

② 미래비전추진단장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교류, 국제금융지구 활성화, 의료특구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도서관운영, 학교지원, 과학육성 및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지원,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서비스 자원개발·연계·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 자활사업, 장애인복지,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지출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지원, 지역경제진흥, 유통,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4. 구세입 총괄 및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서비스 자원개발·연계·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 자활사업, 장애인복지,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3. 보육, 여성정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등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및 드림스타트, 외국인 및 다문화업무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복지시설, 고령화 대책에

3. 보육, 여성정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등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및 드림스타트, 외국인 및 다문화업무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복지시설,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제8조(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점상·가로정비 및 전문건설업 관리,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 환경미화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수질·토양오염 관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소음·진동대책,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개발 및 관리 녹지보전,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복원에 관한 사항

<삭 제>

관한 사항

제9조(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  
시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노점상·가로정비 및 전문건설업  
관리,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 환경미화  
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수질·토양오염 관리, 환경  
개선비용부담금, 소음·진동대책,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개발 및 관리 녹지보전,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복원  
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1조(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에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  
정과, 주차문화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재  
난 복구대책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에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  
정과, 주차문화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재  
난 복구대책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도로계획 수립·조정,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사업, 하천·유수지, 수방대책,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설비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자동차와 건설기계등  
록, 교통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주·정차지도 단속, 교통시설 설  
치, 주차장에 관한 사항

제11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청사관리, 인사, 직원능력개발 및  
후생복지, 의회협력, 법제심사에 관  
한 사항



2. 도로계획 수립·조정,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 하수사업, 하천·유수지, 수방대책,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설비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자동차와 건설기계등록, 교통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주·정차지도 단속, 교통시설 설치, 주차장에 관한 사항

2. 구정홍보, 구정의 정보화, 전산운영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3. 동 행정 지원, 자원봉사,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회단체 지원 총괄, 지역협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 체육시설,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5. 문서관리,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통합 인허가에 관한 사항